

特許情報

올림픽휘장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條約

(1981.9.26. 나이로비에서 채택)

第1章 實體規定

第1條 當事國의 義務

本條約의 當事國은 누구나 第2條와 第3條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公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OC헌장에 定義되어 있는 바의 올림픽휘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러한 휘장을 포함하고 있는 標章登錄을 拒絕하거나 無效로 할 義務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에 의해 商業的 目的으로 標章이나 기타 標識로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義務가 있다. 上記 定義 및 그 휘장의 圖形的 表現은 附錄에 再現되어 있다.

第2條 義務에 對한 例外

(1) 다음의 경우에는 第1條에 規定된 義務는 本條約의 當事國을 羈束하지 않는다.

(i) 올림픽휘장으로 構成되어 있거나 올림픽휘장을 標章으로서 本條約이 當事國에 關하여 發效된 날 이전, 또는 第1條에 規定되어 있는 義務가 第3條에 의거하여 그 국가에서 留保된 것으로 看做되는 期間 동안에 그 標章이 登錄된 경우

(ii) 올림픽휘장으로 構成되어 있거나 올림픽휘장을 포함하는 標章이나 기타 標識를 商業的 目的으로 當該

國家에 使用하는 경우로 그 國家에 關하여 本條約이 發效된 날 이전에 또는 本條約에 規定된 義務가 第3條에 依據 留保된 것으로 看做되는 期間에 合法的으로 그러한 使用을 開始한 사람이나 企業이 그 국가에 계속하여 使用하는 경우

(2) 第1項 第i)號 規定은 當事國으로 되어 있는 條約에 依據한 登錄에 의하여 當事國에서 登錄의 效力이 있는 標章에 關해서도 또한 적용된다.

(3) 第1項 ii)號에서 언급된 사람이나 企業의 허락을 얻은 使用은 同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나 企業에 의한 使用으로 看做한다.

(4) 올림픽운동이나 活動에 關한 情報로서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條約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도 올림픽휘장의 使用을 防止할 義務가 없다.

第3條 義務의 留保

IOC가 當該 國家에서의 올림픽휘장 使用을 公認할 條件과 公認對價로 얻을 수입중 內國올림픽위원회(NOC)의 몫에 關하여 IOC와 NOC 사이에 發效中인 協約이 없는 期間에는 本條約의 어떤 當事國도 第1條에 規定된 義務가 留保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第2章 그 루

第4條 1章의 例外

第1章의 規定은 關稅同盟, 自由貿易地域, 其他 經濟그룹 또는 地域이나 小地域그룹의 構成員인 本條約 當事國에 關하여는 그러한 同盟·地域 또는 기타 그룹의 設立書에 依據한 그들의 公約, 특히 商品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적용되는 規定에 關한 公約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第3章 最終條項

第5條 條約當事國이 되기 위한 節次

(1)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이하 “기구(The Organization)”라 함) 또는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國際(파리)同盟(이하 “파리同盟”이라 함)의 會員인 國家는 다음에 의하여 이 條約 當事國이 될 수 있다.

i) 署名에 이은 批准書, 受諾書 또는 認定書의 寄託
ii) 加入書의 寄託

(2) 第1項에 언급되지 않은 國家로서 UN의 會員國이거나 UN과 關聯을 맺은 特別機關은 加入書 寄託에

의해 이 條約 當事國이 될 수 있다.

(3) 批准書·受諾書·認定書 및 加入書는 機構(WIPO) 事務總長(이하 “事務總長”이라 함)에게 寄託한다.

第 6 條 條約의 發效

(1) 批准書·受諾書·認定書·加入書는 寄託하는 最初 3國에 關하여는 이 條約은 3번째의 批准書·受諾書·認定書 또는 加入書가 寄託된 날로부터 1個月後에 發效한다.

(2) 批准書·受諾書·認定書나 加入書를 寄託하는 기타 國家에 關하여는 本 條約은 그 書類가 寄託된 날로부터 1個月 後에 發效한다.

第 7 條 條約의 失效

(1) 當事國은 事務總長에게 通知함으로써 이 條約을 失效시킬 수 있다.

(2) 失效는 事務總長이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年後에 發效한다.

第 8 條 條約의 署名과 言語

(1) 이 條約은 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原本중 어느 하나에 署名을 하여야 하며 모든 原本은 동일한 公信力이 있다.

(2) 事務總長이 이해관계가 있는 政府와 協議한 후 아랍어·독일어·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 그리고 機構(WIPO)會議나 파리同盟總會가 정하는 기타 言語로 公式原本을 作成한다.

(3) 이 條約은 署名할 수 있도록 나이로비에서 1982. 12. 31까지, 그 후에는 제네바에서 1983. 6. 30까지 開放

한다.

第 9 條 條約의 寄託: 寫本의 送付: 條約의 登錄

(1) 이 條約의 原本은 나이로비에서 署名을 위해 더 이상 開放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事務總長에게 寄託한다.

(2) 事務總長은 第5條 (1)項과 (2)項에 언급된 모든 國家에 이 條約의 寫本 2부를 證明하여 送付해야 하며 다른 國家도 申請이 있으면 送付해야 한다.

(3) 事務總長은 이 條約을 UN 事務局에 登錄해야 한다.

第10條 通知

事務總長은 다음 事項에 關하여 第5條 (1)項과 (2)項에 언급된 國家들에게 通知해야 한다.

i) 第8條에 依據한 署名

ii) 第5條 (3)項에 依據한 批准書·承諾書·認定書 또는 加入書의 寄託

iii) 第6條 (1)項에 依據한 이 條約의 發效日

iv) 第7條에 依據 通知된 失效

附 錄

올림픽휘장은 좌에서 우로 파란색·노란색·검정색·초록색·빨간색의 順으로 配列된 5개의 서로 연결된 고리로 構成된다. 올림픽휘장은 단색으로 표시하든 상이한 색상으로 표시하든 간에 올림픽고리 만으로 構成된다. <㉞>

發 刊 案 內

海外 特許情報

— 季 刊 —

本會는 年 4回 季刊으로 海外特許情報를 發刊하고 있습니다.

4·6倍版 200面내외로 發刊되는 이 刊行物에는 海外特許制度를 비롯하여 各種 特許情報가 실려있습니다.

會員社에는 無料配布되고 있습니다. 많은 愛讀바랍니다. <編輯者 註>

新 刊 案 內

特許專擔部署 業務指針書

저 자: 金 允 培 변리사

규 격: 국판 320면

가 격: 10,000원

工業所有權 지식

저 자: 鄭 泰 連 변리사

규 격: 4×6판·264면

가 격: 2,300원

판매처: 韓國發明特許協會 자료판매센터